

[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 적용 사항]

※ 상시근로자의 범위: 통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.

(단, 파견근로자, 도급근로자, 용역근로자는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)

상시근로자수	적용되는 법률 내용
1인 ~ 4인 (4인 이하 또는 5인 미만)	- 최저임금 - 근로계약서 작성 - 해고 가능, 해고예고 필수 - 휴게, 주휴일, 근로자의 날 - 연소근로자와 임신부의 사용 및 근로시간 제한 - 출산휴가급여, 육아휴직 등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 돌봄 서비스 -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적용. - 법정 의무교육 실시 *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(게시, 배포방법으로 가능) * 개인정보보호교육(온라인 수강 대체 가능) *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(게시, 배포방법으로 가능) * 퇴직연금교육(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)
5인 ~ 9인 (5인 이상 또는 10인 미만)	- 해고 등의 제한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,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,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) - 휴업수당 - 연차유급휴가. (5인 미만은 연차유급휴가(연차수당도 지급 안함)를 부여안함.) - 생리휴가(무급) -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. -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 -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(2021년 7월 1일부터) -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(2022년 1월 1일부터) - 법정 의무교육 실시: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(직장내성희롱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 포함)
10인 이상	- 취업규칙 제정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-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(취약직종(7종)*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) * 전화상담원, 돌봄서비스종사원, 텔레마케터, 배달원, 청소·환경미화원, 아파트경비원, 건물경비원
30인 이상	-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 처리제도운영 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-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(2021년 1월 1일부터) -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(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의무) (단,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미만 공사현장은 과태료 부과 1년간 유예)
50인 이상	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(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적용) - 장애인 의무고용: 근로자 총 수의 3.1% 이상 장애인고용 -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(2020년 1월 1일부터) 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100인 이상	-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(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) * 부담금 산정식=([상시근로자수×의무고용율]-장애인 근로자 수)×부담기초액×해당 월수
300인 이상	- 고용형태 공시제
500인 이상	- 직장 어린이집 설치